

제 2012111514 호

#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
1. 연구소명: 제원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 
[소속기업명: 제원엔지니어링]
2. 소재지: 부산 사하구 구평동 472-30
3. 신고 연월일: 2012년 5월 29일

※ 유효기간: 소기업인정요건 한시적 규제완화 적용 만료일(2013년 06월 30일 까지)
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 
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 
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.

2012년 5월 30일

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

